

인지세 납부 안내

「인지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, 발코니 확장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,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거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는 **균등납부**, 발코니 확장계약서는 각각 **정부수입인지** 형태로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.

구분	세액구간	세액		
		전체	계약자 부담	사업주체 부담
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	10억원 초과	35만원	17만5천원	17만5천원
발코니 확장 (추가선택품목 I) 및 시스템 에어컨 (추가선택품목 II) 계약서	1천만원 초과~3천만원 이하	2만원	2만원	2만원
	3천만원 초과~5천만원 이하	4만원	4만원	4만원

※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입하신 후 전자수입인지를 아파트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 ※ 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(우체국, 은행)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,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(<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/>) 에서 발급 가능하며,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(126)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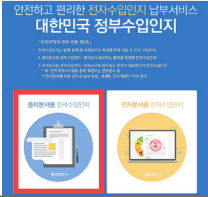
온라인 인지세 구매 방법

‘전자수입인지’ 검색

NAVER +Mobile 전자수입인지

네이버 및 그 외 포털 사이트

종이문서용 ‘전자수입인지’ 선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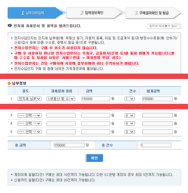
비회원·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납부정보 선택, 기입

구매 : 납부정보 입력

① 용도 : 인지세 납부
 ② 과세문서 종류 :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 ③ 금액 : 해당세액
 ④ 건수 : 각 1건
 ⑤ 확인 후 결제



출력 및 첨부·보관



단 1회만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확인 후 출력

오프라인 인지세 구매 방법

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

※ 방문 전 해당지점 문의 요망

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

※ 용도 : 인지세 납부

결제 및 전자수입인지 발급

※ 현금납부만 가능, 발급 후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

ACRO Ritz County